

『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6년 3월 13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3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3월 16일

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해운

나. 제안이유

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,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비막이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그 동안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, 위원회 운영방법 등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반영 (안 제3조)

-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막이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(안 제6조 제2항 제3호)
-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건축 상 시상근거 규정 신설 (안 제24조)
-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(별표 1)

라. 참고사항

「건축법,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건축법 시행령,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
-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
- 건축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 설계자 등에게 제공하는 건축상 시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